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83
----------	-----

2021. 4. 19.
행정재경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3. 5. 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
- 나. 상정의결
 - 제29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2021. 3. 18.)
“심사보류”
 - 제29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2021. 4. 19.)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뉴디자인국장 : 김희주)

-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보훈관계 법령 및 지침을 적용,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예우를 다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제1호)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제도개선을 권고한 안(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강화)을 반영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19조)

- 대치유수지 체육공원에 조성된 풋살장의 기능과 사용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별표 1, 별표 2)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44조
 -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9조
-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입법예고(2020. 12. 31. ~ 2021. 1. 20.) 결과, 아래의 의견 접수
 - ▶ 제출기관 : 강남구체육회
 - ▶ 제출의견 : 강남구체육회 회원종목단체가 구립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요구
 - ▶ 검토결과 : 강남구체육회 회원종목단체가 구립체육시설을 우선 사용 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지역주민 누구나 차별없이 구립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반하므로 개정 불가
 -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구경남)

○ 국가보훈 관련 법령에 따른 유공자 및 그 가족 등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체육시설 이용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또한 대치유수지 체육공원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¹⁾에 따른 BTL방식으로 건립되었고 실시협약에 따라 2008.7.16.~

2028.7.15.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 아우러 2020.5. 대치유수지 체육공원에 풋살경기장 조성에 따라 사용료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제2조(정의), 제4조(사용허가)의 개정사항은 용어의 사용을 정비하고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제4조제3항 중 ‘갈음’을 ‘대신’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²⁾ 부합하지 않아 현행대로 ‘갈음’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사용료), 제9조(사용료의 감면)의 개정규정은 조문의 용어 및 형식을 정비하고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대상자의 사용료 감면을 확대하려는 것임. 다만, 제9조제4항제1호 중 단서조항의 개정사항은 보다 구체적으로 감면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보이나 ‘단,’을 ‘다만,’으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형식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0조(사용료의 반환)제1항제4호를 제2항으로 개정한 것은 입법형식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제1항제4호의 신설규정은 사용허가의 취소 및 사용정지에 관한 기준을 추가하려는 바 주민의 권한을 제한하는 기준으로는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논란이 될 우려가 있는 바 바람직한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보여져<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제2항의 신설규정은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서 사용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기간이 적정한지 살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짐. 제3항의 신설규정은 이용제한에 따른 결과를 게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게시 할 대상이 없는 바 ‘구청 홈페이지 등’을 명시하는 것이 조문 구성상 바람직해 보임.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BTO)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BTL)

2)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 2018. p. 83

- ‘대신하다’는 ‘갈음하다’와 의미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으며, 고유어인 ‘갈음하다’를 굳이 한자어인 ‘대신하다’로 바꿀 필요가 없으므로 ‘갈음하다’를 그대로 살려 쓴다.

- 안 제11조의2(이용 등의 제한), 제12조(손해보상 및 사용자의 책임), 제13조(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서는 알기 쉽고 명확하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해 보임.

- 안 제14조(체육시설의 운영위탁)제2항에서는 필요한 경우 위탁기간을 1년 단위에서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체육시설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³⁾에서는 위탁의 근거만 있고 위탁의 기간 및 그 연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체육시설의 관리위탁의 기간 및 그 연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가 적용된다고 판단됨. 그럼에도 3년 단위로 지속적으로 연장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공유재산 관련 법령과 부합하지 않아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 보여짐. 제4항 중 ‘운영위탁기간’은 ‘임차기간’으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는 바 대치유수지 체육공원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BTL 사업방식으로 ‘운영기간’을 ‘위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 안 제15조(수탁자의 의무)의 제목은 ‘(수탁기관의 의무)’로 하고 본문 중 조문을 <예시⁵⁾>와 같이 규정하는 것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⁶⁾와 정합성 측면에서 바람직해 보임.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5) <예시>

‘수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탁기관’으로 규정

6)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안 제18조(위탁의 철회) 제목은 위탁계약이므로 ‘(위탁의 해지)’ 로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해지사유를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이나 ‘수탁자’ 는 ‘수탁기관’ 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제2항의 신설규정은 계약이 해지된 수탁기관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것으로 보이나 위탁공모 또는 입찰 신청 자체를 제한하려는 의도라면 「지방자치법」 제22조⁷⁾에 따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예시>⁸⁾와 같이 법률에 근거가 있거나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는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안 제18조(위탁의 철회)의 제목은 위탁계약이므로 ‘(위탁의 해지)’ 로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해지사유를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이나 ‘수탁자’ 는 ‘수탁기관’ 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제2항의 신설규정은 계약이 해지된 수탁기관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것으로 보이나 위탁공모 또는 입찰 신청 자체를 제한하려는 의도라면 「지방자치법」 제22조⁹⁾에 따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예시>¹⁰⁾와 같이 법률에 근거가 있거나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7)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8) <예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제7항, 제31조의2제1항·제5항 및 제31조의5제1항·제3항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9)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10) <예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제7항, 제31조의2제1항·제5항 및 제31조의5제1항·제3항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할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는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안 제19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의 신설규정은 체육시설 이용시 난립하는 각종 홍보물, 입간판, 현수막의 설치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안 별표2 사용료 중 풋살장의 대관료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살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본 조례개정안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사용료 감면 조항이 누락되어 있는데.

○ 조례 개정시 관련 조례와 관련한 감면 조항을 누락하였으므로, 위원회에서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함.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끝